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0.11.29.

전부개정 2021.12.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협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監査),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협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회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단체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삭제 <2021.12. 9.>
4. 삭제 <2021.12. 9.>
5.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12. 9.>
-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 나. 협회의 예산사용,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협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 다. “가” 목 및 “나” 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6.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2. 9.>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신설 2021.12. 9.>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신설 2021.12. 9.>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21.12. 9.>
7. “갑질”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신설 2021.12. 9.>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협회의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자”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1.12. 9.>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신설 2021.12. 9.>

제5조(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회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 9.>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1.12. 9.>
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1.12. 9.>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1.12. 9.>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1.12. 9.>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21.12. 9.>
6. 직무관련자와 1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신설 2021.12. 9.>
7. 직무관련자가 협회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신설 2021.12. 9.>

8. 직무관련자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21.12. 9.>
 9. 직무관련자와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21.12. 9.>
 10. 그 밖에 회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21.12. 9.>
- ② 삭제 <2021.12. 9.>
 - ③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 ④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 9.>
 -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회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 9.>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신설 2021.12. 9.>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신설 2021.12. 9.>
 3. 직무 재배정 <신설 2021.12. 9.>
 4. 전보 <신설 2021.12. 9.>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행동강령책임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신설 2021.12. 9.>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신설 2021.12. 9.>
 - ⑦ 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21.12. 9.>

[제목개정 2021.12. 9.]

제6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단체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단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회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회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회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7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그 단체의 소속단체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의 전국규모 연맹체(이하 ‘산하 연맹’이라 한다)를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산하 연맹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그 단체의 산하 연맹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단체, 그 단체의 산하 연맹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 연맹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

속된 단체의 산하 연맹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9조(책임 회피·전가자에 대한 조치) 협회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관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 9.]

제10조(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협회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11조(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단체의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호에 의한 “체육단체“등과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친족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 9.]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단체)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13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 9.>]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중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2. 9.>]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9.>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회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 9.>]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 9.>]

제17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 9.>]

제18조(직원 선거 개입·관여 금지) 직원은 협회 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을 비롯한 체육회 직무와 연관있는 체육단체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2. 9.>]

제19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단체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중전 제11조의3에서 이동 <2021.12. 9.>]

제20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2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 9.>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단체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9. 그 밖에 회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21.12. 9.>

[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 9.>

제2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12. 9.>

[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 9.>

제23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협회 소유의 재산과 협회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2. 9.>

[중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12. 9.>

제2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12. 9.]

제24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협회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협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시도협회사 산하 연맹에 협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

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시도협회나 전국규모 연맹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12. 9.]

제2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 9.>

1. 삭제 <2021.12. 9.>
2. 삭제 <2021.12. 9.>
3. 삭제 <2021.12. 9.>
4. 삭제 <2021.12. 9.>
5. 삭제 <2021.12. 9.>
6. 삭제 <2021.12. 9.>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 9.>

1. 삭제 <2021.12. 9.>
2. 삭제 <2021.12. 9.>
3. 삭제 <2021.12. 9.>
4. 삭제 <2021.12. 9.>

③ 삭제 <2021.12. 9.>

④ 제29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 9.>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신설 2021.12. 9.>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신설 2021.12. 9.>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신설 2021.12. 9.>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신설 2021.12. 9.>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신설 2021.12. 9.>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신설 2021.12. 9.>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신설 2021.12. 9.>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신설 2021.12. 9.>

⑤ 임직원은 제4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⑥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⑦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 9.>

⑧ 임직원은 협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 9.>

[중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12. 9.>]

제26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협회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2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제공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9.>

[중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12. 9.>] [제목개정 2021.12. 9.]

제2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 9.>

[중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2. 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9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중전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개정 2021.12. 9.>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회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개정 2021.12. 9.>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⑤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 9.>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회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 9.>

⑧ 회장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강연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신설 2021.12. 9.>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 9.>

[중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2. 9.>]

제29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회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회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3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회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9.>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 9.>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 9.>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 9.>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 9.>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⑤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 9.>

제3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21.12. 9.>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21.12. 9.>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21.12. 9.>

- ③ 삭제 <2021.12. 9.>
- 1. 삭제 <2021.12. 9.>
- 2. 삭제 <2021.12. 9.>
- 3. 삭제 <2021.12. 9.>

[중전 제21조에서 이동 <2021.12. 9.>]

제3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단체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는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9.>

-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전 제22조에서 이동 <2021.12. 9.>

제3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회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 9.>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장, 행동강령책임자,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 9.>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9.>

[중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12. 9.>

제33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행동강령책임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34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직원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직원 등 그 밖의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 보다 2단계 낮은 징계

[본조신설 2021.12. 9.]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회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3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9.>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회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중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12. 9.>

제35조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를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36조(징계) ① 회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협회 인사위원회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1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5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2. 9.>

③ 제34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 9.>

[중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12. 9.>

제37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설 2021.12. 9.>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21.12. 9.>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및 종전 제1항에서 일부이동 2021.12. 9.>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2. 9.>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12. 9.>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1.12. 9.>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2. 9.>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신설 2021.12. 9.>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신설 2021.12. 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21.12. 9.>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회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9.>

⑦ 회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 9.>

[총선 제26조에서 이동 <2021.12. 9.>]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장 신설 2021.12. 9.>

제38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장과 감사담당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39조(의무적 고발대상)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40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41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 시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42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 9.]

제7장 보 칙 <장 신설 2021.12. 9.>

제43조(교육) ① 회장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9.>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 9.>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 9.>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신

설 2021.12. 9.>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 9.>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신설 2021.12. 9.>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 9.>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갑질근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12. 9.>

④ 제39조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자가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 9.>

⑤ 회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 9.>

[총선 제27조에서 이동 <2021.12. 9.>]

제44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① 회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및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갑질근절 전담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45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 9.]

제46조(포상) 회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 9.]

부 칙 <2010.11.29.>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이사회 승인 후(2010.11.29.) 시행한다.

부 칙 <2021.12. 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개정) 이 내규 부칙(2010.11.29.) “제28조(시행일)은 (시행일)” 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1.12. 9.>

금품 등 수수(收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비위 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개정 2021.12. 9.>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개정 2021.12. 9.>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개정 2021.12. 9.>	강등·해임·파면 <개정 2021.12. 9.>	해임·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해임 <개정 2021.12. 9.>	해임·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 9.>	수 동	정직·강등·해임 <개정 2021.12. 9.>	해임·파면 <개정 2021.12. 9.>	해임·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파면
	능 동	강등·해임·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개정 2021.12. 9.>	수 동	강등·해임·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개정 2021.12. 9.>	파면			파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5조제4항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5만원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	5만원 10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선물과 같은 호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9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40만원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 (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골프협회 귀중

업무 담당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체 귀중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자

(서명 또는 인)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대상	부 서 (직 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여부 (인지/부지)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는 _____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_____ (인)

행동강령책임자 : _____ (인)

20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 진행상황 (수사개시부터 최종 결과까지)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